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99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박균택 · 김의겸 · 서영교
박지원 · 김남희 · 김한규
이성윤 · 김용민 · 김동아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법률 제 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다목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 ----- ----- ----- -----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수사기관</u> 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다. <u>공소청 또는 수사기관</u> ----- -----
라. · 마.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